

제  
1  
0  
3  
호

卷之三

୩୫

등록번호 제 三八호  
서울특별시장  
발행일 유·태  
공보실장  
편집인 최 춘  
인쇄소 경화인쇄  
영 일

內務部長官의 承認을 基에 制定한 서울特別市洞長定

卷之三十一

西紀一九六二年一月八日

서울特別市長 尹泰日

◎市特別市條例第三十四號

서울特別市洞長定員條例

서울特別市洞長定員을 다음과 같이定한다

國別

卷之三

卷一百一十五

三

仁

서울특별시 도로 살수보조 조례 폐지 조례를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에 공포한다

서기 一九六二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윤태일  
서울특별시 도로 살수보조 조례 폐지 조례  
서울특별시 도로 살수보조 조례(四二六一、五、二九 일  
서울특별시 조례 제六호)는 이를 폐지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조  
례

서울특별시 도로 살수보조 조례 폐지 조례를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

卷二十一

로산수보조

구보조 조례(四二六二) 五

하) 는 이를 폐지 차

卷之三

卷之三

敦苑桂白太別典大鐘壽廣新中宗社梅白樓  
 化門西鹿和宮動寺閣進橋門央橋稷松閣  
 洞洞洞洞洞洞洞洞洞洞洞洞洞洞洞洞洞

中區  
 清興德明明惠駱忠鐘大鐘統梨甕大雲塔  
 倫倫倫路路  
 溪天壽二三一化山信六學五內規邑廟幌  
 四外外外外外  
 洞洞洞洞洞洞洞洞洞洞洞洞洞洞洞洞

東大門區

獎	忠	二	外	洞
雙	林	一	外	洞
光	熙	二	外	洞
乙	支	路	二、三	外
乙	支	路	四	外
訓	練	六、七	外	洞
薰	陶	八	外	洞
舟	橋	九	外	洞
山	林	十	外	洞
昌	信	第一	洞	洞
昌	信	第二	洞	洞
昌	信	第三	洞	洞
崇	仁	第四	洞	洞
新	設	洞	洞	洞
普	門	第一	洞	洞

## 城東區

興	黃	里	徽	回	典	典	典	祭	祭	普	龍	龍	頭	第	門
				踏	農	農	農	基	基	祭	頭	基	第	二	二
仁	鷗	門	慶	十	第	第	第	第	第	第	第	三	二	一	一
洞	洞	洞	洞	里	二	二	二	一	一	一	一	洞	洞	洞	洞

-----

杏	杏	沙	馬	堂	弘	通	賢	仁	有	栗	東	文	青	藥	忠	舞	舞
															第一	第二	
堂	斤	.	場	倪	益	器	仁	昌	樂	苑	化	化	邱	水	嶺	舞	舞
洞	洞	洞	洞	洞	洞	洞	洞	洞	洞	洞	洞	洞	洞	洞	洞	洞	洞

-----

城北區

西南東三三三三東城新城廣面長聖玉金  
仙仙仙仙仙仙北北北安牧宜收二水一水  
仙仙仙仙仙仙第一門第一陽第一洞洞洞洞  
洞洞洞洞洞洞洞洞洞洞洞洞洞洞洞洞

北東南西南鐘月貞吉仁松三長華巡始西門大西區

中林洞  
萬里第一洞  
忠正路一、二号洞  
忠正路三号洞  
藍冷石獨立門營  
泉橋洞洞洞洞洞  
峴底第一洞洞洞洞  
峴底第二洞洞洞洞  
峴底第三洞洞洞洞  
鞍山洞洞洞洞洞  
洗劍亭洞洞洞洞洞  
北阿峴第一洞洞洞  
北阿峴第二洞洞洞  
北阿峴第三洞洞洞

麻浦區

孔德第十三洞  
孔德第一洞  
阿峴第二洞  
阿峴第三洞  
阿峴第四洞  
阿峴第五洞  
舊峴第六洞  
弘岩第七洞  
城思第八洞  
繪岩第九洞  
大加第十洞  
疎光第十一洞  
水新第十二洞  
延色第十三洞  
滄山新第十四洞

## 龍山區

葛	漢	西	東	新	厚	厚	細	新	鹽	大	觀	桃	桃	新	孔	孔	孔	孔
水	水	水	興	新	岩	岩	石	江	江	里	興	謁	花	花	德	德	德	德
月	南			庫	第	一	洞	洞	洞	洞	洞	洞	洞	洞	第一	第二	第一	第四
洞	洞	洞	洞	洞	洞	洞	洞	洞	洞	洞	洞	洞	洞	洞	洞	洞	洞	洞

-----

漢	江	路	二	外	文	漢	江	路	三	外	孝	龍	門	昌	元	青	青	梨	泰	心	元
江	路	一	外	契	漢	江	路	三	外	洞	龍	門	昌	元	曉	波	波	院	院	遠	新
路	一	洞	洞	洞	洞	洞	洞	洞	洞	洞	洞	洞	洞	洞	路	三	外	第一	第二	洞	洞
二	外	一	外	一	外	一	外	一	外	一	外	一	外	一	外	外	外	第一	第一	洞	洞

-----

## 永登浦區

漢江路二斗二洞	龍普光山
永登浦第一洞	洞洞
永登浦第二洞	洞
永登浦第三洞	
永登浦第四洞	
永登浦第五洞	
堂山第一洞	
堂山第二洞	
堂山第三洞	
堂山第四洞	
楊坪第一洞	
楊坪第二洞	
楊坪第三洞	
文來第一洞	
文來第二洞	
道林第一洞	
道林第二洞	

別理由

九	大	新	新	新	新	老
老	林	吉	光	豐	南	洞
洞	洞	洞	洞	洞	洞	洞
道	第	一	二	三	四	五
上	道	第	一	二	三	四
鷺	梁	第	二	一	二	三
本	津	一	三	四	五	六
黑		石	石	石	石	石
石		第	二	三	四	五
第		一	二	三	四	五
三						
洞						

黑	本	鷺
石	石	本
石	第	鷺
第	二	石
三	一	石
洞		石

(二五二) (二五一)

이  
례  
는  
공  
부  
한  
날  
로  
부  
터  
施  
行  
한  
다九老洞區域은 面積 三·四平方杆、世帶數一、八一一世帶  
理 由 (九老洞)

人口 九、七五三名(인구) 同區域內 十餘萬坪에 達하는  
 無住宅地帶(倭政時軍練兵場候補地、現國有地)에 政府施  
 策에 依하여 市에서 建立하는 公營住宅 六〇〇棟  
 及 簡易住宅 二七五棟이 建工되어 이에 入住한 世  
 帶는 一·三〇〇世帶로서 人口도 一一〇〇〇名을 推  
 想하게 될뿐 아니라 本住宅建立事業은 年次計劃으로  
 앞으로는 繼續建立擴增될것 이므로 이에 따른 行政  
 對象의 激增으로 因한 洞行政事務量을 調整함과 아  
 울리 新設된 集團部落住民의 便宜를 圖謀하고자 洞  
 事務所를 別途로 設置하고 洞長一人을 增置고 저하  
 內務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制定한 서울特別市 再建  
 班運營條例를 이에 公布한다。

西紀一九六二年一月一六日

서울特別市長 尹 泰 日

## ◎ 서울特別市 條例 第二三五號

## 서울特別市再建班運營條例

## 第一章 總 則

第一條 (再建班設置) 서울特別市 各洞에 再建班을 두다

第二條 (目的) 再建班(以下班이라 한다)은 國民의 公  
 的生活과 再建運動의 基本單位로서 相扶相助하고 融  
 和親善을 圖謀하며 國家再建의 意慾을 鼓吹함과 同  
 時에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監督下에 班內에서  
 施行되는 行政的 또는 再建國民運動의 모든 施  
 策을 自發的으로 推進實踐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三條 (再建國民運動促進會의協助) 班運營에 關하여

區에 있어서는 再建國民運動區促進會와 洞에 있어

서는 洞促進會의 協助를 받도록 한다

第四條 (班의廢置分合) ①班을 廢置分合하여 한대에

는 班員의 意見을 들어 洞長이 決定한다

②統의 廢置分合에 對하여도 또한 같다

③洞長은 前項의 決定을 하였을 때에는 遷拂없이

區廳長에 그 要領을 報告하여야 한다

## 第二章 組 織

第五條 (班의組織) 班은 十乃至 二十家口로서 構成

하고 班內의 住民은 누구든지 班員이 된다

第六條 (統의設置) ①洞長은 區廳長의 承認을 받어

統을 한다

② 統은 十班内外로 構成한다

第七條 (統長과 班長의 委嘱) 小班에는 班長을 統에

는 統長을 두다

② 班長은 班員이 互選한 者를 洞長이 委嘱하고 統

長은 洞長의 推薦에 依하여 區廳長이 委嘱한다

③ 班長 및 統長은 그 區域 内에 居住하며 反共思想

과 革命精神이 透徹하고 勤勉着實하여 再建意識이

強한 者로서 統班員이 東北匪犯이 아야 한다

第八條 (統長班長의 職能) 班長 및 統長은 所轄 班

統을 締轄代表할

第九條 (統長班長의 任期) 班長은 統長과 任期是一

年으로 한다. 但

再委嘱할 수 있다

第十條 (監督) 班長 및 統長은 第一次는 洞長、第二次

로 區廳長의 指揮監督를 받는다

는 統長이 不適當하다고 認定한 때에는 班長을 解

免하고 또는 統長의 解職을 上申할 수 있다

② 班長統長의 異動이 있을 때에는 洞長은 週知없이  
區廳長에게 그 要領을 報告하여야 한다

### 第三章 運營

第十二條 (運營委員會의 設置) 班의 運營의 適正을

期하여 地方行政의 健全한 發展을 圖謀하기 爲하

여 市、區 및 洞의 各級 再建班運營委員會 (以下安

員會라 하니) 를 두다

第十三條 (各級委員會의 委員의 定數) 各級 委員會

委员의 定數는 下로 같다

一、特別市 再建班 運營委員會

七名以内

二、區再建班 運營委員會

五名

三、洞再建班 運營委員會

五名

第十四條 (各級委員會의 構成) ① 各級委員會에 委員

長副委員長 각一人을 두다

② 市委員會 委員長은 市長、副委員長은 副市長이 된

다

③ 區委員會 委員長은 區廳長 副委員長은 委員이 互

選된다

④洞委員會 委員長은 洞長이되고 副委員長은 委員  
이互選한다

第十五條 (委員의 委屬) 各級委員會 委員은 그 区  
域內에 居住하며 反共思想이 透徹하고 學識과 德  
望이 있는者를 委員長이 委屬한다

第十六條 (常任委員會의 設置) ①各級委員會에 常任  
委員을 두다

②市委員會 常任委員은 內務局長과 委員長이 委屬

한 委員이 된다

③區委員會의 常任委員은 總務課長이 된다

④洞委員會의 常任委員은 洞地方主事가 된다

⑤常任委員은 委員會의 事務를 掌理한다

第十七條 (各級委員會의 會議、協議) 各級委員會는 每  
月 一回以上 會議를 開催하고 班運營實績의 審議評定 및 運營에 對한 意見을  
協議決定한다

第十八條 (實踐事項策定) ①市委員會는 每月 再建班

· 의 實踐한 「우리의 課業」을 策定하여야 한다

②各區 및 洞委員會에서는 各其 地域의 實情을 考  
酌하여 前項의 實踐한 課業을 適宜調整할 수 있다

③前項에 依하여 實踐한 課業을 調整하였을 때에  
는 이를 上級委員會에 報告하여야 한다

第十九條 (委員會의 職員과 任命) ①各級委員會에 幹  
事長一人과 書記若干名을 두다

②幹事 및 書記는 再建班 事務를 擔當하는 公務員  
中에서 當該行政機關의 長이 任命한다

③幹事 및 書記는 委員長의 命을 받아 庶務에 從事  
한다

#### 第四章 常 會

第二十條 (常會) 班은 每月 三日에 定期常會를 開  
催하여야 하다 但 必要에 따라 臨時常會를 갖을  
수 있다

第二十一條 (常會의 召集) 常會는 班長이 召集한다  
第二十二條 (班員의 出席) 常會는 班內의 家口主 또  
는 主婦全員이 出席하여야 한다

第二十三條 (常會의 協議事項) 常會에서는 左의 事

項을 協議 決定 또는 報告한다

一、區 또는 洞長의 示達事項의 實踐方法

二、班內事務의 運營에 關한事項

三、前月分 우리의 課業實踐事項檢討 및 今月分 우

리의 課業實踐方法 協議

四、市民의 協同生活에 關한事項

五、班員의 自拔

第二十四條 (記錄簿의 備置) 常會에는 記錄簿을 備置하고 班員의 缺席、協議決定報告 및 其他事項은 記錄하여야 한다

第二十五條 (決定事項의 實踐責任) 常會에서 協議決定한 事項은 班員各著가 合心協力하여 實踐할 責任을 진다

第二十六條 (實踐事項의 報告) 常會에서 協議決定된 當月分의 우리의 課業 實踐事項 및 前月分의 實踐事項을 班長은 每月五日까지 緩長에게 緩長은 每月七日까지 洞長에게 洞長은 每月一〇日까지 區廳長에게 區廳長은 每月一五日까지 市長에게 報告하여

야 한다

第二十七條 (實踐한 課業과 示達) ①再建班員이 實踐한 우리의 課業은 市再建班 運營委員會에서 決定되어 依한다

②每月分 우리의 課業은 前月中에 區廳長이 洞長을 經由하여 緩班長에게 示達하여야 한다

③洞長은 우리의 課業의 實踐方法을 協議하기 為하여 緩班長會議를 召集할 수 있다

第二十八條 (要望事項의 建議) ①常會에서의 要望事項을 行政當局에 建議할 수 있다

②前項의 建議를 하거 前項에는 班長은 遷滞없이 総長을 經由하여 洞長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③前項의 建議事項의 處理結果는 다음 班常會時에 班員에게 周知시켜야 한다

第二十九條 (建議事項의 處理) ①洞長이 前條의 建議事項을 受理하였을 때에는 洞에서 處理할 수 있는 것은 遷滞없이 處理하고 그 외의 事項은 區廳長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② 区廳長이 前項의 建議事項을 受理하였을 때에는  
區에서 處理할 수 있는 것은 處理하고 그外의 事項

은 市長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③ 洞長 및 区廳長은 前各項의 處理狀況을 各己 区廳  
長 또는 市長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 第五章 秩序

第三十條 (自戒의 方法) ① 常會의 出席 및 우려의 課

業實踐成績이 极히 不良하거나 非協助的인 班員에  
對하여는 常會의 決定하는 바에 依하여 三回以上勸  
告하여도 이에 不應할 때는 一定時期間 自戒를 勸  
告할 수 있다

② 常會에서 班員의 自戒를 決議하였을 때에는 이  
를 統長經由 洞長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第三十一條 (自戒의 種類) 自戒는 다음 三種으로 한다

一、 常會에서 發言謬誤

二、 謝通

三、 協同裨益의 謝職

第三十二條 (統班長의 記錄備置) 班長 및 統長은 班內

또는 統內의 實態를 知悉할 수 있는 記錄을 備置  
하여야 한다

第三十三條 (統班長의 秘密保持義務) 班長 및 統長은  
公務員으로서 洞長의 承認을 得한者以外에는 班內  
또는 統內의 諸般統計 및 記錄을 他人에게 提示할  
수 없다

第三十四條 (金品徵收禁止) 班長 統長은 班 또는 統  
의 經費를 充當하기 為하여 班員 또는 班長으로부  
터 金品을 徵收할 수 없다

第三十五條 (委任事項) 本規則外에 班運營上 必要한  
事項은 市長이 바로 定한다

### 附則

① 本條例는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 檢紀四二九二年九月一八日 서울特別市 規則第一六八  
號 서울特別市 國民班運營規則 및 서울特別市規則 第  
一六七號 서울特別市 國民班 運營委員會 規則은 이  
를 廢止한다

(14)

내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서울특별시 시민회관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기一九六二년一월一일

서울특별시 조례 제一一六호  
서울특별시장 윤태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서기一九六二년一월一一일  
서울특별시장 윤태일

서울특별시 시민회관을 운영하기 위하여 시민회  
관비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제一조 (설치) 시민회관을 운영하기 위하여 시민회

관비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제二조 (세입) 본회계의 세입은 사용료 기타 수입

과 국고보조 및 일반회계의 전입금으로서 충당한다

제三조 (세출) 본회계의 세출은 전조의 세원으로서

충당한다 단 영어가 있을 때에는 일반회계에 전

출할수 있다

본 조례는 서기一九六二년一월一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조례 제一一七호

서울특별시 여비지급조례를 폐지하는 조례  
서울특별시 여비지급조례(昭一九〇、八、二八、서울특

서울특별시 조례 제一一八호

내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정한 주택관리 사무소 설치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一九六二년一月二〇일

서울특별시장 윤태일  
주택관리사무소 설치조례

제一조 ①수재민주택과 공영및 잔여주택을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의 주택관리 사무소를 설치한다

구로동 주택관리 사무소

옹암동 주택관리 사무소

②전항 주택관리사무소의 원자는 자자 당해 동네둔다

제二조 ①주택관리사무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수한 직원을 두나

◎ 전부의 직원수와 직종은 시장이 바로 정한다

제三조 부과관리사무소 직원은 다음의 업무를 처리 한다

주택외 선량한 유지 관리

연부금 및 임대료의 조정작업

주택의 무단전용 매매행위 및 당해주택 구역내의

무허가건축의 단속

기타 주택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四조 주택관리사무소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부 칙

본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③前項의 公費는 國稅徵收法 第七五條의 但書를適用하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公告한 날로부터 一〇일의期限을 經過한 뒤 三日以内에 執行하여야 한다

◎ 서울特別市規則第二二四號  
一九六二년 일월 一五일

## 규 칙

서울특별시장 윤태일

### 市稅滞納處分에 依한 押留財產處理規則

第一條 (目的) ①本規程은 地方稅의 帶納處分에 依하여 押留中에 있는 財產 (不動產을 除外하여 以下

最少限 防止하여 帶納者의 損益保障을 目的으로 한다  
②押留財產의 處理에 關하여 法令條例 其他 따로 規定이 있는 것을 例外하고는 本規程에 依한다

第二條 (公費公告) ①押留財產의 公費公告는 當該財

產을 押留한 날로부터 늦어도 五日以内에 하여야 한다  
②前項의 公告를 할 때에는 公費期日方法、場所等과

公費前日까지 滯納稅金、督促料、滯納處分費를 完納 할 境遇에는 押留를 解除한다는 뜻을 帶納者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③前項의 公費는 國稅徵收法 第七五條의 但書를適用하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公告한 날로부터 一〇일의期限을 經過한 뒤 三日以内에 執行하여야 한다

**第三條 (再公賣公告)** 押留財產의 再公賣公告를 要한  
때에는 再公賣事由가 發生한 날로부터 늦어도 三日  
以內에 하여야 한다. 公告期間은 特別한事情이 있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三日以內로 短縮하고 公賣는 公  
告期間經過後 三日以內에 하여야 한다.

**第四條 (公賣)** 押留財產에 對하여 二回以上 公賣에 附  
하여도 流札되거나 應札하기 없을 때에는 十음公賣  
時마다 見積價格의 百分之 10에 該當하는 金額을  
遞減하여 落札될 때까지 繼續하여 公賣에 附하여야  
한다.

**第五條 (滯納處分의 中止)** 前條의 規程을 適用한結果  
果 그 見積價格이 催促手數料와 滯納處分費에 充  
當이고 殘餘가 生生餘地가 없을 때에는 國稅徵收法  
第九六條의 規定에 依하여 滯納處分을 中止하고其  
押留를 解除하여야 한다.

**第六條 (滯納處分의 繼行)** 滯納處分中止後에 滯納者가  
故意로 財產을 藏匿하거나 脱漏된 것을 發見하였을 때 또는 稅務公務員의 誤認으로 中止하였을 때는

다시 滯納處分을 繼行하여야 한다.

#### 附 則

本規定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서울特別市政諮詢委員會費用辨償規則을 改正하여 이에  
公布한다

단기四二九四年一月一六日

서울特別市長 尹 泰 日

#### ◎ 서울特別市規則第二三五號

서울特別市諮詢委員會費用辨償規則中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三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三條 委員에 對한 日費는 다음에 依하여 五千圓을  
支給한다

一、 委員이 委員會에 出席한 境遇

二、 委員이 委員會의 職務에 關하여 常勤한 경우

三、 委員이 市長의 要請에 依하여 諮問에 出席한

境遇

附 則

이規則은 檘紀四二九四年一一月一六日부터 施行한다

서울특별시 군로자 학숙소 직제를 제정하여 이에 공  
포한다

서기一九六二년一월一八일

서울특별시장 윤태일

서울특별시 규칙 제二二六호

서울特別市 勤勞者 合宿所 職制

第一條 (管掌事務) 서울特別市 勤勞者 合宿所 (以

下合宿所라 한다)는 零細勤勞者の 收容 給食 其他

經濟的向上을 為한 救濟에 關한 事務를 管掌한다

第二條 (所長) 各合宿所에 所長을 둔다

所長은 地方行政參事로 써 补한다

所長은 市長의命을 받아 所運營에 關한 諸般事務를

掌理하며 所屬公務員을 指揮監督한다

第三條 (定員) 一、各合宿所에 所長以外에 다음의 公  
務員을 둔다

二、東大門勤勞者合宿所

地方行政主事

地方厚生主事補

地方行政書記

地方厚生書記

地方保健技員

地方機械技員

地方行政書記補

三、南大門勤勞者合宿所

地方行政主事

地方厚生主事補

地方行政書記

地方厚生書記

地方保健技員

地方機械技員

地方行政書記補

四、城東勤勞者合宿所

地方行政主事

## 地方厚生書記

地方行政書記補

人

前各項의 公務員의 定員은 追後 이를 指定한다.

第四條 (事務分擔) 一、 地方行政主事、地方厚生主事補

地方行政書記、地方厚生書記는 上司의命을 받아 所運營에 關한 諸般事務를 當擔한다.

二、 地方保健技員은 收容者の 保健및 疾病發生의 防止에 關한 事務에 從事한다.

三、 地方機械技員은 所內諸般技術事務에 從事한다.

## 附 則

一、 本規則은 公布한날부터 施行한다.

二、 檢紀四二九〇二月一四日字 規則 第一二四號 서울

特別市立勤勞者合宿所 職制는 이를 廢止한다.

서울南大門重修工事事務所 規則을 制定하여 이에 公布한다.

西紀一九六二年一月一七日

서울特別市長 尹 泰 日

## ◎ 서울特別市規則第二二七號

서울南大門重修工事事務所規則

六九三八

第一條 (目的) 서울南大門重修工事を 迅速果敢하게

推進하기 為하여 서울特別市長 (以下市長이라한다)

指揮監督下에 서울南大門重修工事事務所 (以下事務所라한다)를 運営한다.

第二條 (事務所의 位置) 事務所는 南大門重修工事現場에 運営한다.

第三條 (職員) 事務所에는 所長一名과 그所屬下에다 음의 職員을 運営한다

主 事	(前渡支出員)	一 名
技 術	都 邊 首	一 名
都 邊	記 錄 士	一 名
技 術	圖 士	一 名
都 邊	備 員	若干名

若干名

第四條 (所長의 管掌事務) 所長은 財經事務官中에서 市長이 命하고 市長의 命을 받아 다음事項을 執行한다

一、所屬職員의 指揮監督

二、前渡金(工事費一切)의 執行

三、工事計劃書作成

四、工事契約締結

五、部分工事의 直營專決

六、工事推進 및 現場監督

七、工事에 關한 底務處理

八、工事에 關한 一切記錄作成

九、工事場備備

一〇、其他施工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

第五條 (任命 및 監督) 主事、技士 및 書記는 서울特別市職員中에서 이를 命한다

技術囑託、都邊首、記錄士、製圖士、警備員은 有給으로 하되 所長이 任命하고 都邊首는 所長의 命을 받아 葉業者 및 從業員을 指揮監督한다

第六條 (監督官) 本工事에 派遣된 文敎部監督官은 市

長의 命을 받아 事務所에 常勤하며 다음事項을 擔當한다

一、工事計劃書의 作成催記

二、工事監督 및 檢查의 確認

三、工事企劃建議

第七條 (補佐官) 市長補佐官은 市長의 命을 받아 다

음事項을 處理한다

一、重修事務所業務의 指揮監督

二、工事基本計劃의 檢討進達

三、其他施工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

第八條 (協助 및 協議) 教育局長은 南大門 重修工事에

必要한 事項을 協助한다

教育局文化課長과 學校施設課長은 市長補佐官을 그 管掌事務에 關하여 相互協議下에 決定한다

第九條 (委員會의 召集) 市長은 必要에 따라 서울特別市文化財保存委員會를 召集하고 다음事項을 諮問할 수 있다

一、工事基本計劃

二、其他必要社事項

附  
助

**第十條** 이 規則은 西紀一九六二年一月一七日부터 施行한다

소장이 유고시 일에는 소내 수석파장이 그 직무  
를 대리한다

제 11 조 (정부) 시험소에 소장되어 있음의 다음의 종류의  
일 등다

지방위생기좌

지방행정주사  
—

지방위생기사

지방위생기사보  
이

지방행정서기

지방위생기원

지방행정서기보

지방위생기원보

제4조 (파와파장) 시험소에 약품검정과 식품화학과

방사능측정과 위생화학과 세균학적과를 둘러둔다

약품점경과장을 지방위생기관로서 그의과장을 지방

위생기사로서 보한다

(약품점강과) 약품점강과는 의약품 화공약품

소장은 지방위생기정으로 써 보한다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내 제반 사무를  
하여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서울특별시 위생시험소 직제를 제정하여 이에 공포  
한다

서울특별시장 윤태일

二十一

서울특별시  
위생시험소  
직제

제 — 조 (업무) 서울특별시 위생시험소 (이하 시험소)

라 한다)는 시민보건증진을 위하여 제반 위생시

함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  
조  
(소장) 시험소에 소장을 둘다

**소장은** **자방위생기경으로써** 보한다

소장은 시장의 명을 빼어 소내 제반 사무를 겸리

하마 소속공무원을 지휘 김독학다

위생기사로서 보한다

물검사에 관한사항을 관찰한다

제六조 (식품화학과) 식품화학과는 조미료, 통조림제

품, 과자류의 색소검사, 영양가 측정에 관한 사항

을 관찰한다

제七조 (위생화학과) 위생화학과는 상수도수, 공통정

호수, 하수, 청량으로, 빙과류, 국장공기 및 유품류

등의 검사와 기타 환경위생에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찰한다

제八조 (방사능측정과) 방사능측정과는 상수도수, 한

강수, 우수 및 공기중의 방사능측정과 윤석물 및 유

육류등의 방사능측정에 관한 사무를 관찰한다

제九조 (세균혈청과) 세균혈청과는 각종 전염병균,

식중독, 기생충, 요식업소, 식기류등의 검사와 주

사멸종도시험, 시험동물관리, 매독과 뇌염의 혈청학

적검사와 기타 일반암산화제 검사에 관한 사항을 관찰한다

제一〇조 (사무장) 시험소의 관인판수, 인사, 문서수

발, 회계, 용도 및 타파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

항을 분장케 하기 위하여 사무장을 둔다

부 칙

본 규칙은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 한 경

서울특별시 기회조정관의 직무규정을 제정하여 이에

공포한다

一九六一年一月一五일

서울특별시장 윤태일

### ◎서울특별시총령제 一〇三호

서울특별시 기회조정관 직무규정

제一조 (목적) 본 규정은 기회조정관의 직무기준을

정하여 기회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二조 (직무한계) 기회조정관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一, 경제과 기획수립에 관한사항

二, 각종 운영계획에 관한사항

## 三、심사분석에 관한사항

四、예산편성의 기준인 기본운영계획의 목표에 맞는 예산에 관한사항

五、기회심사분석에 필요한 각종자료와 통계에 관한 사항

六、법령에 관한사항

七、기타, 시장, 부시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

제三조 (보좌) 기회조정관의 직무를 보좌하게 하기위

하여 기회담당관(이하 기회관이라 한다)과 심사분

석관(이하 분석관이라 한다) 및 필요로 직원을 두다

제四조 (기회관) 기회관은 상사의 명을 받아 다음사

항을 분장한다

一、시행경지책의 기회및 계획수립의 조정에 관한 사항

二、자종 중요계획에 관한사항

三、예산에 관한사항

四、기회에 필요한 각종자료와 통계에 관한 사항

五、법령에 관한사항

## 六、설비사무에 관한사항

제五조 (보좌관) 분석관은 상관의 명을 받아 다음사

무를 분장한다

한사항

二、심사분석에 필요한 각종자료와 통계에 관한사항

제六조 (기회담당관) 각국의 주무과장은 소관국내기

회 및 심사분석의 종합조정에 관한사무를 분장하다

제七조 (통계) 기회조정관은 기회과 심사분석에 관

하여 각국의 기회담당관을 통계한다

제八조 (지시) 기회조정관의 직무집행에 있어서 하

부기관에 대한 지시는 시장령의로 한다

제九조 (보고요구) 기회조정관은 하부기관의 자종계

회의 전향사항, 파악과 심사분석에 필요한 통계자

료 및 진행결과에 관하여 경기보고를 받아야 하며 특

히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수시 보고를 받을수 있다

제一〇조 (첨사보고) 기회조정관은 전조의 보고를 수

리하여 이를 종합하고 심사 분석하여 그 결과를  
시장 부시장에게 보고한다

부 칙

- 一、 본규정은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 二、 본규정은 각령의 공포될때까지 잠정적으로 적용  
한다

◎서울특별시후령제 一〇四호

경 찰 국  
경 찰 시

의 근경찰근무 업적 고과 규정 시행 세칙을 다음과 같이  
경침나

서기 一九六二년 일월 一九일

서울특별시장 윤 태 일

外勤警察勤務業績考課規程施行細則

- 第一條 (適用) 外勤警察勤務業績考課는 外勤警察勤務  
業績考課規程(以下規定이라한다)에 依하는外는 本細  
則에 依한다

第二條 (限界) ① 本考課는 警察局의 搜查、情報、騎馬隊、巡察隊의 外勤 및 警察署의 支署派出所、交通、

搜查、情報의 外勤警察官(警查、巡警)에 對하여 實施한다

② 前項外의 外勤警察官이라할지라도 考課의 必要性이 있을 때에는 考課를 實施할수 있다

第三條 (褒賞) ① 警察局 課長 및 警察署長은 規程 第四條에 依한 褒賞 對象者로서 月末最高得點者 三人

을 다음달 五일까지 年中最高得點者 三人을 더음 해 첫달 九일까지 外勤警察官褒賞內申書 (舊式第一號)에 依하여 警察局長에게 報告한다

② 警察局長은 前項의 褒賞對象者中 治安局長褒賞對象者 三人을 매월 九일까지 內務部長官褒賞對象者

를 다음해 첫달 一五일까지 報告한다

③ 서울特別市長 및 警察署長은 成績이 優秀한 外勤  
勤務警察官에 對하여 따로 褒賞할수 있다

第四條 (考課者 및 確認者) 規程 第五條에 依한 考課  
者는 支署派出所外勤은 當該支署派出所主任 交通外

## ◎서울특별시후령제 一〇五호

勤은 交通主任、搜查、情報、外勤、刑事主任으로 한  
다

②規程第六條에 依한 確定자는 所屬科長으로 한다

**第五條 (考課)** 考課자는 外勤警務官考課簿 (書式第二號)를 備置하고 規程第五、七、八條에 依하여 考課事由를 發見 通報 및 申告에 接하였을 때에는 考課 및 減點基準에 依하여 正確に 記載한다

**第六條 (報告)** 考課자는 週間考課成績表 (書式第二號)를 準用)를 다음週 二日까지 月中考課成績表 (書式規程第二號)를 다음달 五일까지 所屬長에게 報告한다

**第七條 (考課活用)** 警察局課長 및 警察署長은 規程第九號에 依한 外勤勤務業績考課成績表를 外勤勤務者가 閱覽할 수 있는 場所에 携り出し 매주 集計公開한다

**第八條 (考課表送達)** 警察局 課長 및 警察署長은 被考課者が 轉勤 (市內) 時는 外勤勤務業績考課表當該月分 (前月累計記入) 을 新任地 警察署長에게 送付한다

附 則  
本令은 公布한날로부터 施行한다

서울특별시	기획위원회	국장을	공	내	무	보	설
서울특별시	기획위원회	국장	교	재	부	국	
서울특별시	기획위원회	국장	산	보	전	사	회
서울특별시	기획위원회	국장	경	우	국	국	
서울특별시	기획위원회	국장	수	도	국	국	
서울특별시	기획위원회	국장	찰	거	설	국	
서울특별시	기획위원회	국장	국	도	국	국	
서울특별시	기획위원회	국장	일	국	국	국	

서울특별시 기획위원회 국장을 개정하여 이에 공포한다

서기 一九六二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윤 대 일

서울특별시 기획위원회 국장

제一조 (설치) 시장간·시체와 기획예산편성과 집행에 관한 사항을 검토조정하며 자국과 기타 소속기관에 관리적인 사업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이하 시라한다)에 기획위원회 (이하 위원회라함)

라)를  
들다

- 위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분과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二조 (임무)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시장 또는 부시장에게 건의한다.

一、 시 또는 시소속의 계 기관의 장기·중기·단기 기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

二、 예산지침작성의 기준인 각종운영계획의 목표책 정 및 방침에 관한 사항

三、 자국과 기타 소속기관에서 제출하는 각종 중

요계획의 검토 조정에 관한 사항

四、 각종 중요계획작성에 필요한 자료제공 및 협조에 관한 사항

五、 조정된 각종 기획과 계획에 의거한 예산편성

의 지침과 기준의 체계 및 개정

六、 기타 시장 또는 부시장으로부터 지시받은 계

회에 관한 사항

본위원회는 상임위원회로서 서울특별시에 설치하고 각국장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제三조 (구성) 위원회는 기획조정관을 위원장으로 하

고 각국장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위원회에 필요한 조사연구를 위원장은 전문가에게 위촉하거나 또는 이를 전담해 하기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서 울특별시장이 임명한다.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전문위원과 관계공무원을 차석 발언해 할 수 있다.

제四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통리하여 위원회의 해의를 소집하고 그의장이 된다.

위원장은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할 수 있다.

제五조 (의사결차) 위원회의 회의는 기획위원과 반 수의 출석과 출석위원과 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 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본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六조 (서무)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  
사 一원과 서기 一인을 두다  
관사는 기회 조정관선 거제관으로서 서기는 기회조  
경찰서장 서무 담당자로서 충당한다  
제七조 (부부국체) 위원회의 유흥을 관하여 본부부  
에 있는 사항은 위원장이 관한다  
부 칙  
본부부는 광포한부대 서양한다

## 고 시

### ◎ 서울특별시 고시 제六六四호

서기 一九六二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각별회계  
제 세입세출 예산의 오류율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서기 一九六二년 一월 一일

서울특별시장 윤 대 일

◎ 서울특별市告示第六六五號

서울特別市東大門區踏十里洞五四의 一、三八의先所在  
認定道路中 다음과 같이 废止하고 面을 서울特別市  
都市計劃課 및 東大門區廳建設課에 優置하여 關係人에  
게 縱覽에供한다

西紀一九六二年一月四日

서울特別市長 尹 泰 日

회계법  
일반회계  
一〇·四六三·一九三·五〇〇  
세입세출예산액

수도비특별회계 六·四〇七·五一三·九〇〇  
시민회관비특별회계 一九〇·六四六·八〇〇  
공익전당포비특별회계 四三·八〇〇·一〇〇  
주택비특별회계 四一一·五〇一·三〇〇  
도지구회관리비특별회계 一·四三三·八三九·二〇〇  
택지조성비특별회계 四四五·九七二·六〇〇  
건설자재생산비특별회계 六六一·七四五·六〇〇  
특별회계 계 九·五九五·〇一九·五〇〇  
한계 一三〇·〇五八·一一三·〇〇〇

다  
음

種別	起點	經點	主要經過地	幅	延長	面積	備	考
小路	東大門區踏十里洞五四 의一 三八 의二先	四個所					別紙圖面表示部分	

## ◎서울특별시 고시 제 666 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2-9-2번지 앞 구거 340평은 이를 폐지한다

관제도면은 서울특별시 전설국 관리과 및 관화구청에 비치하고 종합에 공함

서기 1961년 1월 8일

서울특별시장 육태일

## ◎서울특별시 고시 제 667 호

서유류 세법 제정실시에 따르는 서울개경에 의하여 당시의 서유류 판매가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월 1일부터 적용실시한다

서기 1961년 1월 5일

서울특별시장 윤태일

유									
취	발	유							
등	화	유							
등	화	유							
경	유	도	산	유	五三카롱	一四、六六〇환	四五、七八〇환	판매가격	비
경	유	도	산	유	五三카롱	一一、四五〇환	一一、一一〇환	왕십리창고인도가격	왕십리창고인도가격
중	유	도	람	五三카롱	五三카롱	一一、四五〇환	一一、一一〇환	왕십리창고인도가격	왕십리창고인도가격
중	유	도	람	五三카롱	五三카롱	九、八〇〇환	九、八〇〇환	왕십리창고인도가격	왕십리창고인도가격
취	발	유(주유소)							

경

유(주유소)

五카통

一·三〇〇환

주유소판매가격

동

화 유

一승

一七〇환

가정용등화유판매가격

기타 기계유는 사업원가+종전의 판매인 수수료×물품세+누손총당금+수송부대비를 합산한 금액을 당 시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서울특별시고시제六六八호  
상법령제三조 및 동령시행규칙 제九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립을 다음과 같이 해제한다  
서기一九六二년一월一八일

서울특별시장 윤태일

성동	구	소재지	보안립	지번	지목	민보안저립	해제번적	소유별	소유자	사유재	비고
향당	동	보통	종류	지	번	면	지	해	제	번	적
보통	보통	보통	보통	보통	보통						
임야	임야	임야	임야	임야	임야						
一·경	一·경	一·경	一·경	一·경	一·경						
一八〇〇	一八〇〇	一八〇〇	一八〇〇	一八〇〇	一八〇〇						
강	강	강	강	강	강	강	강	강	강	강	강
八三二〇	八三二〇	八三二〇	八三二〇	八三二〇	八三二〇						
사유	사유	사유	사유	사유	사유						
소명증	개장	소명증	개장	소명증	개장	소명증	개장	소명증	개장	소명증	개장

◎서울특별시고시제六六九호  
서울도시계획사업 용도토지구획  
정리지구 제四五구획내 시장용지에 대하여 서기一九六一年一二月二七일자

토보전자 제一六一호로 국도건설청장의 승인을 얻어 다음과 같이 현정한다  
관계도면은 당시 건설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관계인의 종람에 공한다

서기一九六一년一월一九일

서울특별시장 윤태일

구	회	위	치	명	청	면	적	비	고
기	정	우두도지구회정리지구제四五구회	시장용지	四四九	九				
번	경	상	동	체	비	지	상	동	

◎서울특별시고시제六七〇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담설리동五四의一에서 三六의一  
번지에 이르는 구거 벌지 도면표시부분 二〇一평을

이를 폐지한다

공고

◎서울특별시공고제四七二호

자동차등록및 검사 사무취급 공고  
파거 경찰국에서 취급하든 시내 자동차의 등록 및  
검사사무를 경부조직법 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내  
무국 우수파악자 단과 차이 차관한수 이에 공고함

서울특별시장 윤태일

## 서기一九六一년一월五일

서울특별시장 윤태일

一、 시내 관용, 자가용, 영업용, 외국인용, 전차량에 적 용한다

二、 본동북 및 검사사무를 一九六一년一월八일부터 취급 한다

三、 一九六一년一월一일부터 동년 一월一五일 사이에 계속점사 해당차량은 내무국 우수파에서 一월一일까지 검사를 하여야 한다

四、 과거 경찰서 경유서류는 해당구청민 경유하여 제출한다  
五、 기경찰국에서 접수된 서류는 우수파에서 이계직 절차리 한다

六、 금반 물품세 양도율 병자하야 자로선에 배정된 차량으로서 고의로 가동치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중에 있으니 말점대는 대로 양도하지 또 는 폐차 처분을 단행할 방침이오니 차회사는 운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람

## ◎서울특별시공 一四二三호

一、 一九六一년一一월三일자로 시장부에 의거 양지일봉품 시장을 허가하였기 이에 공고함

二、 위치 서울특별시성동구하왕십리一一五번지

三、 개설자명 양지시장주식회사 대표취체역 채기철

四、 면적 五七九평九합七작

五、 시선

가. 점포수 一〇七개

나. 건평 二六七평

다. 건물 부록크로란총

라. 기타시설은 시장법시행령 제一조에 해당한것임

六、 준공기일 一九六一년四월三일

서울특별시장 윤태일

## ◎서울특별시공고제四七四호

一九六一년一一월三일자로 시장부에 의거 만미일봉품



一、 시장명	미아리진유시장	가. 시장명	종로·제화점
二、 위치	서울특별시성북구 미아동五三五의四·五	나. 위치	서울특별시종로구 종로二가·三번지
三、 개설자명	일선상사주식회사 대표취체역 전유영	다. 개설자명	국전산업주식회사 대표취체역 한상영
四、 면적	三·九六六·九	라. 면적	一·〇四四·九
五、 시설	일선상사주식회사 대표취체역 전유영	마. 시설	一·〇四四·九
가. 점포수	四〇七개	● 一、 청근콩크리트조八층 네파트먼트一동	
나. 건평	二·三三·〇㎡	● 二、 기타시설은 시장법시행령 제一조에 해당한것임	
다. 건물	청근콩크리트二층	● 三、 시기一九六二년一월二三일	
라. 기타시설은 시장법시행령 제一조에 해당한것임	一九六二년九월三〇일	서울특별시장 윤태 일	
一九六二년一월一七일		서울특별시장 윤태 일	
서울특별시장 윤태 일		서기一九六二년一월一七일	
● 서울특별시공고제四七七호		서기一九六二년一월一七일	
● 서기一九六二년一월一七일자로 시장법에 의거 종로백화점을 허가하였기 이에 공고함		서기一九六二년一월一七일	
가. 시장명	미아리진유시장	가. 통역 및 교환원 약간명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자로서 영어회화의 통
나. 위치	서울특별시종로구 종로二가·三번지	나. 통역 및 교환원	
다. 개설자명	국전산업주식회사 한상영	다. 통역 및 교환원	
라. 면적	一·〇四四·九	라. 면적	
마. 시설	一·〇四四·九	마. 시설	
● 一、 청근콩크리트조八층 네파트먼트一동		● 一、 청근콩크리트조八층 네파트먼트一동	
● 二、 기타시설은 시장법시행령 제一조에 해당한것임		● 二、 기타시설은 시장법시행령 제一조에 해당한것임	
● 三、 시기一九六二년一월二三일		● 三、 시기一九六二년一월二三일	
서기一九六二년一월一七일		서기一九六二년一월一七일	
서기一九六二년一월一七일		서기一九六二년一월一七일	
● 서기一九六二년一월一七일자로 시장법에 의거 종로백화점을 허가하였기 이에 공고함		● 서기一九六二년一월一七일자로 시장법에 의거 종로백화점을 허가하였기 이에 공고함	

부에 차선있는자, 남녀부모

나. 교환원

자전증(自軌證)과 주장할증(主張할증) 소유자로서 성격이 명  
랑하고 표증(表證)을 쓰고 말증이 정화 하며 여정  
다운 유연성이 소유자

三. 지원절차

가. 제출서류

1. 이력서

1-1. 호적초본 또는 기록초본

2. 추천서

3. 사진

제출서류는 일체 반복치 않음

나. 제출처

서울특별시 세무국 종무과

다. 제출기관

1961년 1월 26일 하오三서까지  
정부 고용원 규정 제4조 해당자

四. 결재자

가. 실기 나. 면접

五. 고사과목

1961년 1월 7일 13:00

六. 고사일시

서울특별시

八. 합격자 발표 및 임명증 1961년 1월 11일

13:00

九. 기타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서울특별시 내  
무국총무과에 문의하시오

1961년 1월 19일

서울특별시장 윤태일

◎ 서울특별시 공고 제479호

해군본부 경연도로 설치를 위한 토지 수용 계약 신  
청이 있으므로 토지수용령 시행규칙 제10조의 규  
정에 의하여 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一. 사업계획 도로에 관한 사업(해군본부경연도로설치  
공사)

1. 수용신청토지 및 전몰

가. 토지 서울 영등포구 대방동 191-의 5

해(海) 446평 중 39평

나. 전몰 서울 영등포구 대방동 191-의 5

전평 14평

## 三、보상금액

가. 토지 一금 一·一七〇·〇〇〇화원

(회당 三〇·〇〇〇화원  
회당 六〇·〇〇〇화원)

나. 전물 一금 八四〇·〇〇〇화원

## 四、판계인의 주소 성명

가. 서울 영등포구 대방동 一九一의五

장선기 육군수

나. 서울 영등포구 대방동 一九一의五 강무섭

## 五、수용시기 서기 一九六二년三월일

## 六、수용신청자 해군참모총장 중장 이성호

서기 一九六二년一월一一일

서울특별시장 윤태일

◎서울特別市公告第四八〇號  
廢車車輛復活에關한公告五·一六革命以後 廢車措置된 車輛에 對하여는 當時  
警察局에서 一九六一年十二月十五日까지 申請에 依하여

- 가. 車輛復活申請書(洞長의 居住確認證 및 市民證添附)
- 나. 官用車에 있어서는 車輛保有臺數策正 및豫算確認證書
- 다. 稅金未納車輛은 稅金完納證明書
- 라. 營業用車輛은 所屬會社의 車主確認書
- 마. 交通違反車輛은 証約書

復活措置하였는 바 아직復活申請을 하지 않은 車輛이  
있으므로 그期日을 오는二月十五日까지 延長하오니  
該當車輛은 當局에 所定手續을畢하여復活申請하여  
주심을 바랍니다 萬若此期日内에申請하지 않으면  
失効되오니 留念하시기 바랍니다

## 一、復活對象車輛(軍用型渣車는除外)

가. 五·一六以後 檢查未畢로 廢車된 車輛中 檢查  
完備된 차

나. 五·一六以後 稅金未納으로 廢車된 車輛으로서  
稅金을 完納한 차

다. 五·一六以後 交通法規三回違反으로 廉車된 車輛으로서  
車輛으로서 整備가 完全한 차

## 二、具備要類

三、復活車輛에對한 民事上의 權利取得에 對한 것은 當

局으로서는 一切 車輛을 것 이드로 車輛 車輛에 記

名된 使用主가 手續하시기 바랍니다

#### 四、復活對象車輛番號

자、官用

一一三六 八六六 八六九 九〇八

一一三五 一一六一 一一六三 一一八四

一一三一 一一三二 一一三四 一一三七〇

一一三四 一一六八二 一一八五〇

자、自家用

一一三九四 九八八 一〇〇七 一五八九

一一四五 一八九三 一九四六 二三三五

一一五〇五 二五三〇 二五五一 二五七二

二五九七 二五九九 二六二三 二六四六

三三四八 三七四三 外國人 五一一二九

五一二一六 五一三一九

#### 石公告白

西紀一九六二年一月二七日

서울特別市長 尹泰日

◎서울特別市公告第四八一號  
市內에서 排出되는 粪尿를 化學的으로 終末處理카爲  
하여 有機肥料工場의 新設의 條件으로 吸引 賦與에  
依한 粪尿收去 代行者를 選定코자 하는바 希望者는  
다음要領에 依據 申請하시기바람

서기一九六二年一月二九日

서울特別市長 尹泰日

#### 一、提出書類

자、申請書

자、事業計劃書

자、有機肥料工場示方書及 計劃圖

자、企業體에對한 登記簿謄本

#### 二、申請期間

一九六二年二月二〇日까지

#### 三、條件

자、有機肥料工場設置는 一日 粪尿 一,〇〇〇石以上  
을 處理할수 있는 規模로서 當市에서 指定하는

期間內에 設置하여야 한다

나、有機肥料工場을 設置하는 條件下에 糞尿收去代行權을 附與하되 當市에서 指定하는 吸引式車를 導入하여야 한다

다、工場設置前에 糞尿收去代行을 하려는者は 工場設置資金의 一割以上該當하는 金額을 當市에豫置하고 別途誓約을 締結한다

#### 四、申請人選定

申請人에 對한 選定은 當市에서 制定한 基準에 依하여 結成하되 提出된 諸類는 一切 返還치 않는다

#### 五、其他

評價한 것은 當市保健社會局衛生課에 問議할 것

## 사령

◎一九六二년一월五일

보건사회국사회파 지방서기 權 性 尤  
동대문군로자합숙소 기동배치를 명함

지방서기에 임함  
四급一호봉을 금함  
연공가급 월급을 금함

직업소개소 지방서기 車 源 詰

보건사회국사회파 근무를 명함

단 동대문군로자합숙소 기동배치를 명함

중구정수과 지방서기 石 鎮 星 権

보건사회국사회파 근무를 명함

단 동대문군로자합숙소 기동배치를 명함

영등포구정수과 지방서기 李 廷

보건사회국사회파 근무를 명함

단 동대문군로자합숙소 기동배치를 명함

동부수도사업소 지방서기 廉

보건사회국사회파 근무를 명함

직업소개소 근무를 명함

◎一九六二년一월八일

경찰국보안파근무 순경 이 영 종

지방서기에 임함

四급一호봉을 금함

내무국 우수과 균무를 명함  
수도국 업무과 균무 지방주사 손  
북부수도사업소 균무 지방서기 이  
중구경수과 균무 지방서기 이

마포구 부파과 균무 지방서기 이  
성북구 정수과 균무 지방서기 이

서울특별시 공무원 교육원 균무를 명함  
공무원 훈련원 장서리 지방참사 홍

공무원 훈련원 균무 지방주사 이  
공무원 훈련원 균무 지방서기 임

공무원 훈련원 균무 지방서기 이  
공무원 훈련원 균무 지방서기 이

서울특별시 공무원 교육원 균무를 명함  
공무원 훈련원 균무 지방서기 이

공무원 훈련원 균무 지방서기 이  
공무원 훈련원 균무 지방서기 이

공무원 훈련원 균무 지방서기 이  
공무원 훈련원 균무 지방서기 이

경찰국보안과 균무 경위 김

지방주사에 임함  
3급 8호봉을 금함

내무국 을수과 균무를 명함  
내무국 을수과 균무를 명함

지방서기에 임함

연봉가금 월 四八봉을 금함

내무국 을수과 균무를 명함  
경찰국 보안과 경사 김

연봉가금 월 九봉을 금함

내무국 을수과 균무를 명함  
경찰국 보안과 경사 김

연봉가금 월 一四봉을 금함

지방서기에 임함

연봉가금 월 一四봉을 금함

내무국 을수과 균무를 명함  
경찰국 보안과 경사 김

연봉가금 월 一四봉을 금함

지방서기에 임함

연봉가금 월 一四봉을 금함

경찰국 보안과 경사 김 주 열

연봉가금 월 一四봉을 금함

연봉가금 월 一四봉을 금함



제무국	세무파	군무를 명함	마포구	부과파	주사 朴 性 樂	동부	수도사업소	지방주사 金 勤
사무	형평에 의하여 그직을 명함	중구 사회파 주사 金 大 享	중부	수도사업소	군무를 명함	동부	수도사업소	지방주사 徐 潤 錫
지방참사에 임함	서대문구 사회과장에 보함	서대문구 사회파 주사 池 泳 基	중부	수도사업소	군무를 명함	동부	수도사업소	지방기사 蘆 鳴 烈
「금四호봉을 금함」	보건 사회국 사회과 겸 안암공익전단도 주임서리를 명함	종로구 초병파 지방주사 白 南 振	중부	수도사업소	군무를 명함	동부	수도사업소	지방기사 蘆 鳴 烈
단 결무처 근무를 명함	단 결무처 근무를 명함	종로구 초병파 지방주사 白 南 振	중부	수도사업소	경북부·수도사업소 주사 安 錫 潤	동부	수도사업소	지방기사 蘆 鳴 烈
증구 근무를 명함	증구 사회파 지방주사 宋 相 根	동부 수도사업소 군무를 명함	중부	수도사업소	경북부·수도사업소 주사 安 錫 潤	동부	수도사업소	지방주사 金 勤
증구 근무를 명함	증구 사회파 주사 具 瞥 會	증구 수도사업소 군무를 명함	증구	수도사업소	지방주사 金 勤	동부	수도사업소	지방주사 金 勤
동대문구 근무를 명함	동부 수도사업소	동부 수도사업소 군무를 명함	동부	수도사업소	지방주사 金 勤	동부	수도사업소	지방주사 金 勤
증구 사회파 주사 黃 圭 晉	증구 수도사업소	증구 수도사업소 군무를 명함	증구	수도사업소	지방주사 金 勤	동부	수도사업소	지방주사 金 勤
서대문구 근무를 명함	성	元 潤 鎭 鉉	서대문구	수도사업소	지방주사 金 勤	동부	수도사업소	지방주사 金 勤

서부수도사업소	군무를 명함	업무 과정 서부수도사업소 주사	金	鶴	壽
중부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 지방주사	支那	金	鶴	壽
서부수도사업소	군무를 명함	북부수도사업소 전무를 명함	南	漢	漢
북부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 지방주사	全在榮	南	漢	漢
서부수도사업소	군무를 명함	서부수도사업소 지방주사	朴秉奎	南	漢
남부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 지방주사	金龍漢	南	漢	漢
서부수도사업소	군무를 명함	남부수도사업소 지방기사	尹楨奎	南	漢
남부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 지방기사	李鍾冕	南	漢	漢
서부수도사업소	군무를 명함	서부수도사업소 지방주사	李昌雨	南	漢
남부수도사업소	군무를 명함	남부수도사업소 지방주사	李亨秀	南	漢
서부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 지방주사	李德仁	南	漢	漢
남부수도사업소	군무를 명함	내무국 총무과 군무를 명함	李相鴻	南	漢
용산구	검서부수도사업소 기사	李相鴻	南	漢	漢
남부수도사업소	전무를 명함	전선국 도시계획과 地方技員	金斗滿	南	漢
단원경찰국	군무를 명함	원예 의하여 그직을 명함	金斗滿	南	漢
동부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 지방주사	李相鴻	南	漢	漢
북부수도사업소	군무를 명함	지방공무원령 제6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金斗滿	南	漢

◎一九六二년 일

개월간 봉급의 三[문의] — 을 감함	四二一九四二년 — 월 — ○일	六九六二
◎一九六一년 — 월 — 일	동부 병원 군무 의무축탁 邊 海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서울특별시 보건사회국·방역과장 서리	지방기자 김 창 순	◎一九六一년 — 월 — 일
보건의무관보에 임함	위생 시험소 지방기사 金 濟 菲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四호봉급을 금함	서울특별시 보건사회국 방역과장에 보함	◎一九六一년 — 월 — ○일
보건사회국 사회과장 후생사무관 李 甲 寿	을지로 세무소 사세주사 이 용 운	서울특별시 전임을 명함
감찰위원회의 정계의결에 의하여 파면함	남대문 세무서 사세주사보 신 춘 운	사세정 직세과 토목기사 김 태 원
◎一九六一년 — 월 — 일	시우기념관 전임을 명함	재무국 세무과 근무를 명함
영등포 행정장에 보함	광화문 세무서 사세주사 김 계	운회원 하영
남부청장사무를 축탁함	광화문 세무서 사세주사 김 계	식 식
월수당 만화율 금함	광화문 세무서 세무서 토목기사 서 준	창 안
직영공장 지방기사 田 甲 鎮	광화문 세무서 세무서 토목기사 서 준	창 안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사세청 사세주사	창 안
을지로 세무서 토목기사보	종로구 근무를 명함	창 안

서울특별시 전임을 명함	사세청	북부 세무서 토목기사보 이상용
중구 근무를 명함	서래문 세무서 사세주사 임성기	동대문 세무서 토목기사 김성용
서울특별시 전임을 명함	성동세무서 사세주사보 강우용	동작문 세무서 토목기사 김성기
성동구 근무를 명함	중부세무서 토목기사 신용수	서울특별시 전임을 명함
북부 세무서 사세주사보 이준영	서울특별시 전임을 명함	마포구 근무를 명함
재무부 토목기사보 이숙영	성동구 근무를 명함	종로 세무서 사세주사보 이재명
서울특별시 전임을 명함	서울특별시 전임을 명함	서울특별시 전임을 명함
성북구 근무를 명함	영등포 세무서 사세주사보 유재성	마포구 세무서 토목기사보 박철학
서울특별시 전임을 명함	서울특별시 전임을 명함	서울특별시 전임을 명함
서울특별시 전임을 명함	서울특별시 전임을 명함	서울특별시 전임을 명함
중부 세무서 사세주사보 김인자	내무국 인사과 근무를 명함	서울특별시 전임을 명함
서래문 세무서 토목기사보 이인자	내무국 인사과 주사 宋萬燮	서울특별시 전임을 명함
서울특별시 전임을 명함	산업국 시장과 근무를 명함	서울특별시 전임을 명함
서대문구 근무를 명함	내무국 관광과 주사 姜潤熙	서대문구 세무서 토목기사보 이성용

마포구 총무과 주사 金 上 鳳

마포구 관광과 주사 金 濬 浩  
지방행정참사에 임함

제3국 계무과

주사 金 尚 玉

제3국 관광과 주사 金 濬 浩  
二금五호봉을 금함

사무 행정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제3국 관광과

주사 金 濬 浩

제3국 관광과 주사 金 濬 浩  
내무국 관무를 명함

사무 행정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제3국 관광과

주사 姜 澄 黑

제3국 관광과 주사 金 濬 浩  
서울특별시 농사교도소장 교도사보 김 영 운

지방행정참사에 임함

제3국 관광과

주사 金 上 鳳

제3국 관광과 주사 金 上 鳳  
서울특별시 종로구 총무과장서리 윤 락 환

사무 행정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제3국 관광과

주사 金 上 鳳

제3국 관광과 주사 金 上 鳳  
경기사무관에 임함

지방행정참사에 임함

제3국 관광과

주사 金 上 鳳

제3국 관광과 주사 金 上 鳳  
서울특별시 종로구 총무과장에 보함

제3국 관광과

주사 金 上 鳳

제3국 관광과 주사 金 上 鳳  
서울특별시 건설국 관리과장서리 촉탁 임 우 병

제3국 관광과

주사 金 上 鳳

제3국 관광과 주사 金 上 鳳  
경기사무관에 임함

지방행정참사에 임함

제3국 관광과

주사 金 上 鳳

제3국 관광과 주사 金 上 鳳  
서울특별시 건설국 관리과장에 보함

제3국 관광과

주사 金 上 鳳

제3국 관광과 주사 金 上 鳳  
서울특별시 산업국 상공과장서리 촉탁 양 무 용

사회국 방역과 관리를 명함

제3국 관광과

주사 金 上 鳳

제3국 관광과 주사 金 上 鳳  
행정사무관에 임함

원예의 하여 그적을 금함	수도국 세무과 지방주사 金容稷	서울특별시 산업국 상공과장에 보함
원예 의하여 그적을 금함	공보실 주사 하회영	원예 의하여 그적을 금함
행정주사에 금함	공보실 주사 하회영	원예 의하여 그적을 금함
四호봉을 금함	기호	기호
기회 조경관설 주사 洪益燮	기회 조경관설 주사 洪益燮	기회 조경관설 주사 洪益燮
세무국 세무과 지방주사 김연경	세무국 세무과 지방주사 김연경	세무국 세무과 지방주사 김연경
지방 행정 주사에 일함	지방 행정 주사에 일함	지방 행정 주사에 일함
공보실 군무를 명함	공보실 군무를 명함	공보실 군무를 명함
공보실 지방주사 안기호	공보실 지방주사 안기호	공보실 지방주사 안기호
지방 행정 주사에 일함	지방 행정 주사에 일함	지방 행정 주사에 일함
七호봉을 금함	七호봉을 금함	七호봉을 금함
공보실 군무를 명함	공보실 군무를 명함	공보실 군무를 명함
공보실 지방주사 이상식	공보실 지방주사 이상식	공보실 지방주사 이상식
지방 행정 주사에 일함	지방 행정 주사에 일함	지방 행정 주사에 일함
四금五호봉을 금함	四금五호봉을 금함	四금五호봉을 금함
용산구 군무를 명함	용산구 군무를 명함	용산구 군무를 명함
◎一九六二년一월一一일	◎一九六二년一월一一일	◎一九六二년一월一一일
사무 행정의 하여 그적을 명함	사무 행정의 하여 그적을 명함	사무 행정의 하여 그적을 명함
内무국 사계과 지방서기 元裕益	内무국 사계과 지방서기 元裕益	内무국 사계과 지방서기 元裕益
一호봉을 금함	一호봉을 금함	一호봉을 금함
지방 행정 참사에 일함	지방 행정 참사에 일함	지방 행정 참사에 일함
공보실 군무를 명함	공보실 군무를 명함	공보실 군무를 명함
◎一九六二년一월一一일	◎一九六二년一월一一일	◎一九六二년一월一一일
전설국 도시계획과 지방기원 魚尤和	전설국 도시계획과 지방기원 魚尤和	전설국 도시계획과 지방기원 魚尤和
토목기사보에 일함	토목기사보에 일함	토목기사보에 일함
四금五호봉을 금함	四금五호봉을 금함	四금五호봉을 금함
용산구 군무를 명함	용산구 군무를 명함	용산구 군무를 명함
◎一九六二년一월一一일	◎一九六二년一월一一일	◎一九六二년一월一一일

1832

三호	봉을금함	지방	봉강서기보에 입함
공보실	군무를 명함	공보실	지방서기 김연
		서대문구	지방서기 최일
		공보실	지방서기 서구
지방	행정 주사 보에 입함	지방서기	서구
五호봉을	금함	五호봉을	금함
공보실	군무를 명함	공보실	군무를 명함
지방	통계 주사보에 입함	공보실	지방서기 김세연
五호봉을	금함	지방	행정주사보에 입함
공보실	군무를 명함	五호봉을	금함
지방	행정서기에 임함	공보실	군무를 명함
一호봉을	금함	지방서기 배병호	
연공가금	월드화이트함		
공보실	군무를 명함		
우	익		

六	년	一、국	행여사망인발생하고	광고
		二、본		
		三、주		
		四、성		
		五、정		
三五		六、민		
		七、박		
		八、경		
		九、남		
		十、미		
		十一、한		
		十二、국		
		十三、상		
		十四、국		
		十五、상		

九、八、七、六、五、四、三、二、一、  
소 차 인 년 성 성 주 본 국  
지  
품 의 상 령 별 명 소 적 적

一〇、九、八、七、  
소 차 인 년 성 지  
품 의 상

없 불 불 五. 남 조 불 미 한  
대  
음 상 상 자 유 상 상 국

종로구청 신사리묘지  
제길 헤  
중부병원  
一一월一一일  
음 상 상

一一、九、八、七、六、五、四、三、二、一、  
사 소 차 인 년 성 성 주 본 국  
망 장 지  
인 소 품 의 상 령 별 명 소 적 적

一一、九、八、七、  
사 소 차 인 년 성 지  
망 장 지  
인 소 품 의 상

한국  
중구 일정동 一三五  
동내문구 창선동 四동  
불 불 없 음 상 상  
여자연 윤자연  
종로六가지  
一一월一一일  
까스중독

一一、九、八、七、  
사 소 차 인 년 성 지  
망 장 지  
인 소 품 의 상

一、국	한	신사묘지
二、본	미	종로구청
三、주	자심하원	
四、성	상	
五、별	상	
六、명	상	
七、연	상	
八、인	상	
九、착	상	
一〇、소	상	
一一、지	상	
一二、풀	상	
一三、풀	상	
一四、취	상	
금	상	
처	상	
一、취	한	신사묘지
금	미	종로구청
처	자심하원	
二、가	상	
매	상	
장	상	
지	상	
인	상	
종로구청	상	
신사리묘지	한	신사묘지
마비	미	종로구청



一〇. 사망장소	一一. 사망년월일	一二. 사망장지	一三. 가매장지	一四. 취급처
사망년월일	一一월一一일	사망장지	신사리묘지	폐열
사망장소	一一월一一일	취급처	종로구청	신사리묘지
인 소 품 의 상 형 별 명 소 적 적	미 없 미 분 약 여 미 미 한	인	폐 열	신사리묘지
一一월一一일	一一월一一일	一一월一一일	一一월一一일	一一월一一일
상 음 상 상	상 음 상 상	상 상	상 국	

一三. 가매장지	一四. 취급처	一一. 사망장지	一〇. 사망장소	一一. 사망년월일
신사리묘지	신사리묘지	종로구청	종로구청	중부병원
종로구청	신사리묘지	폐결핵	一一월一一일	一一월一一일
준 상	준 상	불 불	불	一一월一一일
구		五八	여 안	한
			갑	
			준	
			상	
			상	
			상	
			음	



九、八、七、六、五、四、三、二、一、  
소 착 인 년 성 성 주 본 국  
지

품의상령별명소적적

한 미 미 미 이 여 불 불 문 없 음 상 상 회 상 상 국 명

七、인 차 의 둘 상

불 불  
상 음  
종 부 희 은  
— — — — 六 일  
제 결 해  
신사모지  
종로구청

一、국 본 주 성 성 년 인 차 소 사 망 상 소 품 의 상 령 령 별 명 명 소 적 적  
二、사 망 상 일 월 년 소 지

# 한국상상래미임어

# 一〇. 사당장소

중부병원  
一一월一八일

一、 四、 취 금 급	三、 三、 가 매 장 장	二、 二、 사 사 방 방	一、 一、 사 사 방 방	○ ○ 지 지	九、 八、 소 차 인 인	七、 六、 차 인 년 년	六、 五、 인 성 성	五、 四、 성 성	三、 三、 주 주	二、 二、 본 본	一、 一、 국 국
취 금 급 장 지 인 일	가 매 장 장 지 인	사 방 방 장 지 인	사 방 방 장 지 인	품 의 상 령 별 명 소 적 적	취 금 급 장 지 인	가 매 장 장 지 인	사 방 방 장 지 인	사 방 방 장 지 인	본 본 국 국	本 本 國 國	一 一 三 三 加 加 매 매 장 장 지 지

종 로 구 청	신 사 리 묘 지	사 태 아	돈 의 동 九 ○	음 상 상	불 불 불	임 신 九 월	남 미 미 미 한	미 미 미 미 한	미 미 미 미 한	미 미 미 미 한	신 사 리 묘 지
종 로 구 청	신 사 리 묘 지	사 태 아	돈 의 동 九 ○	음 상 상	불 불 불	임 신 九 월	남 미 미 미 한	미 미 미 미 한	미 미 미 미 한	미 미 미 미 한	신 사 리 묘 지

三、 二、 一、 주 본 국	四、 三、 二、 취 가 매 금	二、 二、 사 사 방 방	一、 一、 사 사 방 방	○ ○ 지 지	九、 八、 소 차 인 인	七、 六、 차 인 년 년	六、 五、 인 성 성	五、 四、 성 성	三、 三、 주 주	二、 二、 본 본	一、 一、 국 국
취 금 급 장 지 인 일	가 매 장 장 지 인	사 방 방 장 지 인	사 방 방 장 지 인	품 의 상 령 별 명 소 적 적	취 금 급 장 지 인	가 매 장 장 지 인	사 방 방 장 지 인	사 방 방 장 지 인	本 本 國 國	本 本 國 國	一 一 三 三 加 加 매 매 장 장 지 지

미 미 한	종 로 구 청	신 사 리 묘 지	사 태 아	중 학 동 一 一一 월 一 一 일	불 불 불	미 미 미 미 한	미 미 미 미 한	미 미 미 미 한	미 미 미 미 한	미 미 미 미 한	신 사 리 묘 지
상 상 국	종 로 구 청	신 사 리 묘 지	사 태 아	중 학 동 一 一一 월 一 一 일	불 불 불	미 미 미 미 한	미 미 미 미 한	미 미 미 미 한	미 미 미 미 한	미 미 미 미 한	신 사 리 묘 지

四、五、六、七、八、九、十  
년 성 성 년 인 차 소 지  
주 본 국 장 소 지  
취 금 처 인 차 소 지  
법 명 소 적 적

四、五、六、七、八、九、十  
남 미 미 미 한  
세 자 상 상 상  
승 차 상 상  
승 차 상 상  
국

四、五、六、七、八、九、十  
년 성 성 년 인 차 소 지  
주 본 국 장 소 지  
취 금 처 인 차 소 지  
품의 상 형 별 명 소 적 적

四、五、六、七、八、九、十  
불 불 불 불  
한 미 미 미  
훈 이 이  
국 상 상 상  
자 세 세

一〇. 사망장소	一一. 사망년월일	一二. 사망원인	一三. 가매장지	一四. 취급처
국	년월일	인	장지	처
本	년	임	매	취
주	인	인	장	급
성	차	자	지	처
별	인	자	취	급
명	차	처	장	지
소	인	처	매	장
적	차	장	장	지
한	국	국	장	지
신사리묘지	영양실조	종로구청	신사리묘지	영양실조
종로구청	신사리묘지	신사리묘지	종로구청	영양실조

三、二、一、 주 본 국	一、 취 급 소 저 저	四、 취 급 소 저 저	一、 사 망 년 월 일	九、 소 차 지	六、五、四、 년 성 성 주 본 국	一、 취 급 소 저 저	四、 취 급 소 저 저	一、 여 미 한				

六、五、四、 년 성 성 주 본 국	一、 취 급 령 별 명 소 저 저	四、 취 급 소 저 저	一、 사 망 년 월 일	九、 소 차 지	六、五、四、 년 성 성 주 본 국	一、 취 급 소 저 저	四、 취 급 소 저 저	一、 여 미 한				

一、 여 미 한	종로구청	一、 여 미 한	아동 병원	一、 여 미 한								
二 세 자 상 상 국		二 세 자 상 상 국		二 세 자 상 상 국		二 세 자 상 상 국		二 세 자 상 상 국		二 세 자 상 상 국		二 세 자 상 상 국

九、八、七、六、五、四、三、二、一、	一〇、사망장소	九、八、七、
소 차 인 년 성 성 주 본 국	一一、사망년월일	소 차 인
지	一二、취금처	지
품의상령별명소적적	一三、가매장지	품의상
없 분 도동 생후 三자 상상국	一四、총로구청	불 아동 병원
음상 가 범지	신사리묘기	없 월 음상
	영양실조	불 상
	一一월一一일	미 상

一一、사망장소	一一、사망장소	
一一、취금처	一二、취금처	
一一、사망년월일	一二、인	
인	一三、가매장지	사신사례
품의상령별명소적적	一四、총구구청	사신사례
없 분 七월 六일	신사리묘기	칠식제
음상 연 음상상	영양실조	칠식제
	一一월一一일	사신사례
	一一월一一일	사신사례
	一一월一一일	사신사례

六九七八



一、국	한	미	상	한	국	중구구청
二、본	주	소	소	적	적	
三、성	성	명	명	이	잡	
四、정	정	별	별	여	선	
五、인	인	령	령	二	八	
六、년	년	상	상	세	세	
七、학	학	미	상	중	양	
八、자	자	없	음	의료	원	
九、소	지	호	음	원		
一〇、사	장	흡	나비			
一一、방	소	미	상			
一二、사	인	증	의료원			
一三、가	장	신	사리묘지			
一四、취	금	증	구구청			

六九八〇

四、三、二、一、  
성 주 본 국

一、四、三、二、一、  
취 가 사 사 망 장

一、四、三、二、一、  
취 금 매 장

명 소 쳐 쳐

九、八、七、六、五、四、  
소 착 인 년 성 수

一、一、〇、사 망 장

一、一、사 망 장

一、一、사 망 장

지

지

지

품 의 상 형 별 명 소 쳐

미 불 미 한  
상 상 상 국

중 구 구 청

신 사 리 보 지

중 앙 의 료 원

미 미 미 없 출 불 九 남 송 미 미  
형

상 상 음 사 상 세 자 체 상 상

七、六、五、四、三、二、一、  
인 년 성 성 주 본 국

一、四、三、二、一、  
취 금 매 장

一、三、가 배 장

취 쳐 지 인

一、一、〇、사 망 장

一、一、사 망 장

一、一、사 망 장

지

지

지

소 품 의 상 형 별 명 소 쳐

상 형 별 명 소 쳐 쳐

남 차

태아 六 개월 에 장동 八 로 상 유 산

중 앙 의 료 원

상 미 미 없 불 상 상 음 상

신 사 리 보 지

중 구 구 청

한 국

장 원 도 이 하

미 히 히 서 세

남 상

四 三 세 자

양 동 一 번 지 율 톡 사

一〇. 사망장소	一一. 사망년월일	一一. 소지품
一一. 사망장소	一二. 사망년월일	一一. 소지품
一二. 사망장소	一三. 사망장소	一一. 소지품
一三. 사망장소	一四. 취급처	一一. 소지품
一四. 취급처	一五. 성명	一一. 소지품
一五. 성명	一六. 성명	一一. 소지품
一六. 성명	一七. 성명	一一. 소지품
一七. 성명	一八. 성명	一一. 소지품
一八. 성명	一九. 소지품	一一. 소지품
一九. 소지품	二〇. 사망장소	一一. 소지품
二〇. 사망장소	一一. 사망년월일	一一. 소지품

一、사당년월일	一一월一一일
二、사인	불상
三、가매장지	신사리묘지
四、취금처	중구구청
一、국적	한국
二、본적	미상
三、주소	미상
四、성명	이명익
五、성별	남자
六、연령	五四세
七、인원	상
八、차례	不分
九、소지품	없음
一〇、사망장소	용두동一一고개암
一一、사망년월일	미상
一二、사인	미상
一三、가매장지	맘우리묘지

卷八

四	三	二	一	四	三	二	一	○	九	八	七	六	五	四	三	二	一	
성	주	본	국	취	가	사	사	사	소	착	인	년	년	성	성	주	본	
명	소	적	직	급	매	장	년	월	지									
미	미	미	한	종	구	구	망	우	불	불	불	음	급	동	남	김	미	
상	상	상	국	구	묘	지	리	묘	상	상	상	없	성	기	동	세	자	철

七、六、五、四、三、二、一、 인 년 성 성 주 본 국	一、 취 금 처	一、 사 망 년 월 일	一、 취 금 처	一、 사 망 장 소 품	一、 취 금 처	一、 사 망 장 지 지	一、 취 금 처	一、 사 망 장 월 일	一、 취 금 처	一、 사 망 장 소 품	一、 취 금 처	一、 사 망 장 지 지	一、 취 금 처	一、 사 망 장 월 일	一、 취 금 처	一、 사 망 장 소 품	一、 취 금 처	一、 사 망 장 지 지	
상 령 별 명 소 적 적																			
불 미 불 불 미 미 한																			
상 상 상 상 상 상 국	중 구 구 중	망 우 리 묘 지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생후 계월정양례[동七星지]

一、 九、八、七、六、五、四、三、二、一、 사 망 장 지 소 품 의 상 령 별 명 소 적 적	一、 취 금 처	一、 사 망 장 지 지 소 품 의 상 령 별 명 소 적 적	一、 九、八、 사 망 장 지 소 품 의 상 령 별 명 소 적 적	一、 취 금 처	一、 사 망 장 지 지 소 품 의 상 령 별 명 소 적 적	一、 취 금 처	一、 사 망 장 지 지 소 품 의 상 령 별 명 소 적 적	一、 취 금 처	一、 사 망 장 지 지 소 품 의 상 령 별 명 소 적 적	一、 취 금 처	一、 사 망 장 지 지 소 품 의 상 령 별 명 소 적 적	一、 취 금 처	一、 사 망 장 지 지 소 품 의 상 령 별 명 소 적 적	一、 취 금 처	一、 사 망 장 지 지 소 품 의 상 령 별 명 소 적 적	一、 취 금 처	一、 사 망 장 지 지 소 품 의 상 령 별 명 소 적 적		
신 청 통 경 마 장 내	없 음	불 상	불 생	불 후	불 일	불 상	불 상	불 상	불 상	불 상	불 상	불 상	불 상	불 상	불 상	불 상	불 상	불 상	불 상

生后 계월정양례[동七星地]

一、사망년월일	一一、사	二、사망장지	一一、취금처
一一、취금처	一一、취금처	一一、취금처	一一、취금처
一一、취금처	一一、취금처	一一、취금처	一一、취금처
一一、취금처	一一、취금처	一一、취금처	一一、취금처
一一、취금처	一一、취금처	一一、취금처	一一、취금처

분상	영양설조	망우리묘지	중구구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미미미미미미	미미미미미미	미미미미미미	미미미미미미
임신六개월	동대문	임신六개월	동대문
상상상상상	상상상상상	상상상상상	상상상상상
방우리묘지	방우리묘지	방우리묘지	방우리묘지
상상상상음	상상상상음	상상상상음	상상상상음
공동변소미상	공동변소미상	공동변소미상	공동변소미상

한국	한국	한국	한국
미미미미미미	미미미미미미	미미미미미미	미미미미미미
임신六개월	동대문	임신六개월	동대문
상상상상상	상상상상상	상상상상상	상상상상상
방우리묘지	방우리묘지	방우리묘지	방우리묘지
상상상상음	상상상상음	상상상상음	상상상상음
공동변소미상	공동변소미상	공동변소미상	공동변소미상

한국	한국	한국	한국
미미미미미미	미미미미미미	미미미미미미	미미미미미미
임신六개월	동대문	임신六개월	동대문
상상상상상	상상상상상	상상상상상	상상상상상
방우리묘지	방우리묘지	방우리묘지	방우리묘지
상상상상음	상상상상음	상상상상음	상상상상음
공동변소미상	공동변소미상	공동변소미상	공동변소미상

미 남 미 미 미  
상 자 상 상 상

미상

一〇、九、八、七、六、五、四、三、二、一、	一四、三、一、	一〇、九、八、
사 소 착 인 년 성 성 주 본 국	취 금 처	사 소 착
망 장 지	가 매 장 지	망 장 지
소 품 입 상 령 별 명 소 적 적	인	의

미 없 영 양 실 조	창 선 동 시 장 내	六 ○	남 상 미 미 한	미 미 미 미 미
상 음 조	세 자 미 상 상 국		중 구 구 청	우 리 묘 지
			상 상 음	상 음

一一、一〇、九、八、七、六、五、四、三、二、一、	一一、一〇、九、八、七、六、五、四、三、二、一、	一一、一〇、九、八、
가 사 사 소 착 인 년 성 성 주 본 국	취 금 처	사 망 년 월 일
매 장 지	가 매 장 지	장 소 품
지 인 일	인	의

미 미 미 미 미	사 대	一一、 남 미 미 미 한	미 미 미 미 미
신 사 리 묘 지	상 상 상 음 아	세 자 상 상 국	우 리 묘 지
			상 상

성 북 구 석 곤 통 산 三





一、 사망년월일	二、 사망장소	三、 가매장지인	四、 취급처
一〇, 사망년월일	한국성북구미아동	국립현충원	국립현충원
一一, 사망장소	성북구미아동	성북구미아동	성북구미아동
一二, 사망장지인	유산사태아	유산사태아	유산사태아
一三, 가매장지인	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	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	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
一四, 취급처	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	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	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
一五, 성명	이연자	이연자	이연자
一六, 별명	이연자	이연자	이연자
一七, 주민번호	111-1111-11111111	111-1111-11111111	111-1111-11111111
一八, 소지품	의상령별명명소	의상령별명명소	의상령별명명소
一九, 소지지	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	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	제제제제제제제제제제
二〇, 사망연월일	국립현충원	국립현충원	국립현충원

四、三、二、一、 성 주 본 국  명 소 적 적	一、四、三、二、 취 가 사 사 금 매 장 장 처 지 인 일	一、一、〇、九、八、 사 망 년 월 소 차 인 년	七、六、五、四、 차 인 년 성 성	三、二、一、 주 본 국  소 품 의 상 형 별 명 소 적	
		미 미 미 한 성 북 국 청	미 미 미 한 신 사 리 묘 지	미 미 미 한 음 독	약 남 미 미 청 북 구 우 이 통 산
		상 상 상 국 청	상 상 상 상 상	상 상 상 상 상	

八、七、六、五、四、三、二、一、 차 인 년 성 성 주 본 국  의 상 형 별 명 소 적 적	一、四、三、二、 취 가 사 사 금 매 장 장 처 지 인 일	一、一、〇、九、八、 사 망 년 월 소 차 인 년	七、六、五、 차 인 년 성	三、二、一、 주 본 국  소 품 의 상 형 별 명 소 적
--	---	----------------------------------	-------------------	--

불 불 상 상	一〇 개 월 자 상 산 상 국 태 아	여 미 미 미 한 성 북 국 청	미 미 미 미 상 상 상 상	미 없 미 미 음 상 상 상 상	여 생 후 자 자
------------	----------------------------	----------------------	--------------------	----------------------	--------------

一、국	二、본	三、주	四、성	五、성	六、년	七、인	八、착	九、소	지	품	의	상	령	별	명	소	적	적	한	미	미	미	상	상	상	상	자	남	자	삼	세	경	도
一、취	二、사	三、가	四、매	五、장	六、지	七、인	八、착	九、소	지	품	의	상	령	별	명	소	적	적	한	미	미	미	상	상	상	상	자	남	자	삼	세	경	도
一、금	二、처	三、가	四、매	五、장	六、지	七、인	八、착	九、소	지	품	의	상	령	별	명	소	적	적	한	미	미	미	상	상	상	상	자	남	자	삼	세	경	도
一、마	二、포	三、구	四、마	五、포	六、구	七、마	八、포	九、구	지	품	의	상	령	별	명	소	적	적	한	미	미	미	상	상	상	상	자	남	자	삼	세	경	도
一、마	二、포	三、구	四、마	五、포	六、구	七、마	八、포	九、구	지	품	의	상	령	별	명	소	적	적	한	미	미	미	상	상	상	상	자	남	자	삼	세	경	도

三、 주	二、 본	一、 국	一、 쥐	二、 사	一、 사	○	九、 차	八、 소	七、 인	六、 차	五、 년	四、 성	三、 주	二、 본	一、 국
주	본	국	쥐	사	사		차	소	인	차	년	성	주	본	국
소	적	적	금	매	망		지						소	적	적
미	미	한		처	인		품	의	상	령	별	명	소	적	적
상	상	국		지	인	일	소						미	미	한
													미	미	한
													남	미	한
													개	미	한
													월	미	한
													태	미	한
													아	미	한
													자	미	한
													상	미	한
													상	미	한
													국	미	한

七	六	五	四	三	二	一		一	四	三	二	一	○	九	八	七	六	五	四						
인	년	성	성	주	본	국		사	취	가	매	금	장	망	년	월	일	인	자	지					
상	령	별	명	소	적	적		소	품	의	상	령	별	명	상	령	별	미	남	미					
불	약	남	미	미	미	한		도	화	동	이	구	조	산	아	우	기	불	불	불					
四								화	동	이	구	조	산	아	우	기	음	상	상	상					
상	四	자	상	상	상	국		의	의	의	지	마	포	선	사	리	공	동	미	개	월	태	아	자	상

一〇、사망장지	九、소지	八、차
一、국	一、국	一、국
二、본	二、본	二、본
三、주	三、주	三、주
四、성	四、성	四、성
五、년	五、년	五、년
六、인	六、인	六、인
七、년	七、년	七、년
八、월	八、월	八、월
九、일	九、일	九、일
소지	소지	소지
품의상령별명소적적	품의상령별명소적적	품의상령별명소적적
물불불불태남미미미	불불불불용산구청	불불불불
음상상상아자상상상	신사리공동묘지	상상상

신계동五번지하천

一一、사망년월일	一一、사망년월일	一一、사망년월일
조산(부산)	신사리공동묘지	신사리공동묘지
용산구청	용산구청	용산구청
한국	한국	한국
미미미미	미미미미	미미미미
금별	금별	금별
불불불불	불불불불	불불불불
семь	eight	nine
음상	상	상
시립남부병원	시립남부병원	시립남부병원
만성기판지염	만성기판지염	만성기판지염

신사리공동묘지



金 응 洪 一  
남 三 세 자 삼 상 을  
Six 부 부 부 없  
시립남부병원  
一一월八일  
양양신조  
신사리공동묘지  
용산구청  
一五  
세자상상국  
남미미미한

— 11월 10일 —  
운반도중  
연탄가스충돌  
신사리공동묘지  
용산구청

( 7 )



八、七、六、五、四、三、二、一、  
착 인 년 성 성 주 본 국

취 금  
처 지

의 상 령 별 명 소 쳐 쳐

물 미 九 남 물 미 미 미  
개  
상 상 월 자 상 상 상

一、○ 九、八、七、六、五、四、三、二、一、  
사 소 착 인 년 성 성 주 본 국  
망 장 지  
월 일 소 품 의 상 령 별 명 소 쳐 쳐

一、○ 九、八、七、六、五、四、三、二、一、  
사 소 착 인 년 성 성 주 본 국  
망 장 지  
월 일 소 품 의 상 령 별 명 소 쳐 쳐

一、○ 九、八、七、六、  
사 소 착 인 년 성 성 주 본 국  
망 장 지  
월 일 소 품 의 상 령

물 질 시립 병원 음 음 상 상

영동 포구 청 상 사

물 질 시립 병원 음 음 상 상

불 없 시립 병원 음 음 상 상

불 없 시립 병원 음 음 상 상

一、○ 九、소 지 품  
사 망 장 소  
망 장 지  
월 일 소 품

一、○ 九、소 지 품  
사 망 장 소  
망 장 지  
월 일 소 품

불 없 시립 병원 음 음 상 상

불 없 시립 병원 음 음 상 상

—四、 취 금 금 처 지 인	—三、 취 금 금 처 지 인	—二、 취 금 금 처 지 인	—一、 국 미 미 미 상
—三、 취 금 금 처 지 인	—二、 취 금 금 처 지 인	—一、 국 미 미 미 상	—四、 취 금 금 처 지 인
—二、 취 금 금 처 지 인	—一、 국 미 미 미 상	—三、 취 금 금 처 지 인	—二、 취 금 금 처 지 인
—一、 국 미 미 미 상	—四、 취 금 금 처 지 인	—三、 취 금 금 처 지 인	—一、 국 미 미 미 상
—四、 취 금 금 처 지 인	—三、 취 금 금 처 지 인	—二、 취 금 금 처 지 인	—一、 국 미 미 미 상

—三、 주 본 국 소 적 적	—四、 취 금 금 처 지 인	—三、 취 금 금 처 지 인	—二、 취 금 금 처 지 인
—三、 취 금 금 처 지 인	—四、 취 금 금 처 지 인	—三、 취 금 금 처 지 인	—二、 취 금 금 처 지 인
—二、 취 금 금 처 지 인	—三、 취 금 금 처 지 인	—一、 국 미 미 미 상	—三、 취 금 금 처 지 인
—一、 국 미 미 미 상	—四、 취 금 금 처 지 인	—三、 취 금 금 처 지 인	—二、 취 금 금 처 지 인
—四、 취 금 금 처 지 인	—三、 취 금 금 처 지 인	—二、 취 금 금 처 지 인	—一、 국 미 미 미 상

六、五、四、三、二、一、	一、四、三、二、一、	一、九、八、七、六、五、四、三、二、一、
년 성 성 주 본 국	취 가 사 사 망 장 소 지	년 성 성 주 본 국
	금 배 장 월 일	
령 별 명 소 적 적	처 지 인 소 품 의 상 령 별 명	
三 남 美 미 경 미	영 불 신 시 립 병 원	四 남 朴 양
○ 明	등 포 구 청 상 업	○ 세 자 옥
세 자 주 상 기 상	一一월一一四일	세 자 옥

九、八、七、六、五、四、三、二、一、	一、四、三、二、一、	一、九、八、七、
소 착 인 년 성 성 주 본 국	취 가 사 사 망 장 소 지	소 착 인
지	금 배 장 월 일	
품 의 상 령 별 명 소 적 적	처 지 인 소 품 의 상	
없 시 불 三 남 金 道	영 불 자 궁	불 불
립 병 원 상 세 자 鐵	등 포 구 청 상 상	시 립 병 원
음 원 상 세 자 鐵	一一월一一五일	음 상 상
부산 시 남 양 동 가		

一、○ 사망장소	一、○ 사망년월일
二、사	二、사
三、가매장지	三、가매장지
四、취금처	四、취금처
五、소지	五、소지
六、작년설명	六、작년설명
七、인명	七、인명
八、작년설명	八、작년설명
九、소지	九、소지
一〇、사망장소	一〇、사망장소
一一、사망장소	一一、사망장소
一二、사망장소	一二、사망장소

기판지열	기판지열
一一월一一일	一一월一一일
一一月一一日	一一月一一日
一、○ 사리병원	一、○ 사리병원
二、불상	二、불상
三、영동포구청	三、영동포구청
四、미상	四、미상
五、경기광주중내면송기리	五、경기광주중내면송기리
六、남자	六、남자
七、나이	七、나이
八、남자	八、남자
九、남자	九、남자
一〇、남자	一〇、남자
一一、남자	一一、남자
一二、남자	一二、남자
一三、남자	一三、남자

一、○ 사리병원	一、○ 사리병원
二、불상	二、불상
三、영동포구청	三、영동포구청
四、미상	四、미상
五、경기광주중내면송기리	五、경기광주중내면송기리
六、남자	六、남자
七、나이	七、나이
八、남자	八、남자
九、남자	九、남자
一〇、남자	一〇、남자
一一、남자	一一、남자
一二、남자	一二、남자
一三、남자	一三、남자

기판지열	기판지열
一一월一一일	一一월一一일
一一月一一日	一一月一一日
一、○ 사리병원	一、○ 사리병원
二、불상	二、불상
三、영동포구청	三、영동포구청
四、미상	四、미상
五、경기광주중내면송기리	五、경기광주중내면송기리
六、남자	六、남자
七、나이	七、나이
八、남자	八、남자
九、남자	九、남자
一〇、남자	一〇、남자
一一、남자	一一、남자
一二、남자	一二、남자
一三、남자	一三、남자

一、 국 본 주 本国	一、 취 가 매 금 적 적	一、 사 망 년 월 일	一、 사 망 장 지	一、 九 八 七 六 五 四 三 二 本 主 本 國	一、 취 가 매 금 적 적	一、 사 망 년 월 일	一、 사 망 장 지	一、 九 八 七 六 五 四 三 二 本 主 本 國
정 기 시 홍 신 동 별 반 포 리	미 상 상	영 동 포 구 청	불 중 독 자	시 립 명 원	六 ○	남 세 자 상 상 상 상	미 세 자 상 상 상 상	미 미 미 미 미 미 미
경 기 시 홍 신 동 별 반 포 리	미 상 상	영 동 포 구 청	불 중 독 자	시 립 명 원	六 ○	남 세 자 상 상 상 상	미 세 자 상 상 상 상	미 미 미 미 미 미 미
一、 취 가 매 금 적 적	一、 사 망 년 월 일	一、 사 망 장 지	一、 九 八 七 六 五 四 三 二 本 主 本 國	一、 취 가 매 금 적 적	一、 사 망 년 월 일	一、 사 망 장 지	一、 九 八 七 六 五 四 三 二 本 主 本 國	一、 취 가 매 금 적 적

一、 취 가 매 금 적 적	一、 사 망 년 월 일	一、 사 망 장 지	一、 九 八 七 六 五 四 三 二 本 主 本 國	一、 취 가 매 금 적 적	一、 사 망 년 월 일	一、 사 망 장 지	一、 九 八 七 六 五 四 三 二 本 主 本 國	一、 취 가 매 금 적 적
임 기 월 일 七 七 개 월	어 자 상 상 상 국	영 동 포 구 청	불 분 질 식 사	음 분 질 식 사	불 분 질 식 사	음 분 질 식 사	불 분 질 식 사	미 세 자 상 상 상 상
경 기 시 홍 신 동 별 반 포 리	미 상 상	영 동 포 구 청	불 분 질 식 사	음 분 질 식 사	불 분 질 식 사	음 분 질 식 사	불 분 질 식 사	미 미 미 미 미 미 미
一、 취 가 매 금 적 적	一、 사 망 년 월 일	一、 사 망 장 지	一、 九 八 七 六 五 四 三 二 本 主 本 國	一、 취 가 매 금 적 적	一、 사 망 년 월 일	一、 사 망 장 지	一、 九 八 七 六 五 四 三 二 本 主 本 國	一、 취 가 매 금 적 적

九、八、七、六、五、四、三、二、一、	國	一〇、九、八、七、六、五、四、三、二、	인
소 차 인 년 성 성 주 본	국	소 차 망 장 소	지
지		사 망 년 월 일	
품 의 상 형 별 명 소 적 적		취 금 쳐	품 의 상
없 물 불 二 어 미 미 마		양 철 동 一 가 一 一	없 음 물 불
음 상 상 세 자 상 상 상		영 풍 오 구 청	상 상

一一、二、九、八、七、六、五、四、三、	국	一一、二、三、四、	인
사 망 년 월 일		취 금 소	
一一、二、三、四、	인	영 풍 오 구 청	
차 망 장 소	지	이 이 차	
인 년 월 일		불 불 상	
품 의 상 형 별 명 소 적 적		경 북 영 주 군 안 경 면 오 개 죽	
화		신 길 통 산 一 一	
상		박 경	
시 립 병 원		문 문	
一一 월 一一 일		여	
		五	
		음	
		상	
		세	
		자	
		숙	



一、국	二、본	三、주	四、성	五、성	六、년	七、인	八、화	九、소	一〇、사	一一、사	一二、사	一三、가	一四、취	
령	별	명	소	적	제	여	어	지	방	월	방	월	매	금
三	五	세	자	기	한	칠	칠	지	장	월	월	월	매	금
五	本	主	成	成	年	人	化	소	방	방	방	월	매	금
六	本	主	成	成	年	人	化	지	장	월	방	월	매	금

[四三]

七、인	八、화	九、소	一〇、사	一一、사	一二、사	一三、가	一四、취
상	상	품	방	방	방	매	금
상	상	의	월	월	월	지	금
상	상	체	월	월	월	매	금
상	상	결	월	월	월	매	금
상	상	체	월	월	월	매	금
상	상	불	월	월	월	매	금
상	상	불	월	월	월	매	금

[四三]